

2022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동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2022. 11.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 11. 1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2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¹⁾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가 당초 22억 8천만원에서 29억 4천 4백만원 증가하여 52억 2천 4백만원으로 변경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예치금(재무활동)를 당초 37억 5천 5백만원에서 66억 9천 9백만원으로 29억 4천 4백만원(78.4%) 증액하여 당초 편성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자 함.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수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9,262	22,206	2,944
전 입 금	9,200	9,20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7,740	7,740	0
예 치 금 수	2,280	5,224	2,944
이 자 수 입	41	41	0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9,262	22,206	2,944
용 자 성 비 사 업 비	15,500	15,500	0
기 본 경 비	7	7	0
예 치 금	3,755	6,699	2,944

4. 검토 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29억 4천 4백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52억 2천 4백만원)에 반영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예치금(66억 9천 9백만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재원을 여유재원으로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조정내역		
	당초(A)	변경(B)	증감(B-A)
재무활동(행정국 인력개발과)	3,755	6,699	2,944
보전지출(공무원주거안정기금)	3,755	6,699	2,944
예치금	3,755	6,699	2,944

※ 자료근거 :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지출계획,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2.11.16.) 재구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행정국 인력개발과)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78.4%, 29억 4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안 제출 기한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기시작 15일(2022.10.17)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11.16) 뒤늦게 제출되었는 바, 향후 행정국은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의안 제출 기한 준수에 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또한,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조성액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 행정국은 동 기금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다만, 관련 법령에서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기금은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반 예산(재무활동)”으로 기재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재무활동(행정국 인력개발과)”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
 -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이태기
------	-----	-------	-----